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

■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개요사항 ■

-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.
-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(보수교육)
 -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7>
 - 1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 - 2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-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: 2018년 1월 1일
 -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(예정)
- 필수과목 이수 평점: 2평점(2시간)
 - 평점 인정 기준: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(순수교육시간 50분, 질의토의 10분 인정) ex)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인 경우 1평점 인정, 체류시간 120분인 경우 2평점 인정
 -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.
 - ex) 2019년도(1.1~12.31)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(2시간)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. [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: 8평점]
-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
 - 필수과목 종류
 - ① 의료윤리, ② 의료법령, ③ 의료감염관리, ④ 의약품부작용 사례, ⑤ 의료분쟁사례 등
 - 필수과목 교육기관
 -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
 - *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에 따른 필수과목 교육기관 지정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에 따라 322개 교육기관 중 44개 기관을 "필수과목 교육기관"으로 지정, 이에 따른 신청 및 결과보고 방법 변경 안내
 - *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: 일반 교육기관
- 대한의사협회 회원 편익 사이버 연수교육으로도 평점 이수 가능
 - KMA 교육센터에서 사이버강좌(필수과목 포함) 및 자율학습으로 평점 이수 (강좌 수강 후 테스트를 통해 평점 부여)
 - 온라인으로 최대 8평점까지 이수 가능 (사이버강좌 5평점 / 자율학습문제 3평점)